

의안번호	제213호
의결연월일	2023. 12. 1.

-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1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3. 12. 1.

제296회 예산군의의회(정례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과장 : 이관우)

가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」의 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관련 조례 명시를 통한 존속기한 연장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8조의2)
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 안) 2028년 12월 31일

-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
(안 제1조, 안 제2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김영순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에 의거 설치한 ‘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’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